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역자 예비역 편입제도 신설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20호)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22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0)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7.
3. 회부연월일 : 2024. 8. 28.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2)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7.
3. 회부연월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0)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2)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병력 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Ⅲ. 참고사항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은 양 개정안의 동시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방 개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타방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 현역 군인에 대한 규정은 「군인사법」에, 예비역에 대한 규정은 「병역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개정안을 동시에 논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 개정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2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0호)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41조(퇴역 및 예비역) ----- ----- -----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 4. (현행과 같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생략) <신설>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1조 단서에 따른 퇴역 대상자가 예비역에 지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 현행 「군인사법」 제41조¹⁾는 퇴역대상자 중 여군에 대해서만 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 예정인 간부 등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음.

□ 「병역법」 제72조²⁾에 의하면,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기간 역시 현역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군 간부가 연령정년까지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 예비역에 편입되지 않고 바로 퇴역 처리됨.

□ 현재 많은 군 간부가 연령정년까지 복무함에 따라 군 동원소요

1) 「군인사법」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2)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대비 가용 예비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

[군 간부의 연령정년(「군인사법」 제8조)]

(단위 : 세(나이))

계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연령	63	61	59	58	56	53	50	43	43	43	55	55	53	45	40

[’24년도 장교, 부사관 동원자원 중 소요 대비 가용자원 현황]

(단위:명)

구 분	장교		준사관	부사관	
	중 령	소 령	준위	원사	상 사
소요	1,459	5,114	2,132	5,239	24,557
가용자원	894	2,693	662	1,408	3,323

□ 따라서 개정안들은 현역으로서 연령정년에 도달한 남군 간부 등도 퇴역시점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첫째, 연령정년 도달로 자동 퇴역하는 군인은 군복무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퇴역 이후에도 국가에 기여하여 예비전력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저출생 및 전쟁의 지능화 등 안보환경 변화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개정안을 통해 부족한 예비전력 소요
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예비역 편입과 관련된 사항을 「군인사법」
제41조(퇴역)에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역 편입에 관한 조항은 법
체계상 제42조(예비역 편입)에 위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군인사법」 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
한다.

□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문언상으로는 비 전·공상(非 戰·公
傷)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³⁾은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제41조제3호에 해당하는 전·공상(戰·公傷)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은 예비역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군인사법」에서 예비역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부상자 중 예비역으로 운용 가능한 인원을 선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3) 사적(私的)으로 부상을 당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마지막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는 동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⁴⁾, 「군인사법」의 병역 특례(퇴역자에 대한 예비역 편입) 조항은 「병역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수정의견은 아래와 같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0호)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퇴역 및 예비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42조 (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제42조 (예비역 편입) (현행과 같음)	제42조 (예비역 편입) ①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② 제4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병역법」 제72조의2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4)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 신 설 >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군인사법</u>」 제41조 단서에 따른 퇴역 대상자가 예비역에 지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③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7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u> 예비역에 지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u>제72조의2(예비역 지원)</u> ① 「<u>군인사법</u>」 제4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는 군사적 전문성을 갖춘 자원을 예비전력으로 확보하면 비상사태 발생 시 군 복무 중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정안들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